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김태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94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김태호 의원(1명)
찬 성 자 :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이종환, 최영주, 황규복
의원(9명)

1. 제안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에서 태권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기원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태권도 진흥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태권도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 대한 지원 및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태권도단체·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제3항)
- 나. 시장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다.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단련을 도모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태권도단체 및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지원

2.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

7.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 및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 ① 시장은 지역 행사 연계,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홍보 또는 행사를 하는 태권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3-(04)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문서번호	2021080600000008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태호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8.06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제7조제1항, 2항, 3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태권도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 등을 실시하고 태권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제5조제1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나,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 기추진 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서울시 관광체육국 기추진 사업 2021년 예산 2,745,164천원(붙임 참고)

※제3조제3항에서 태권도단체·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6조에서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 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5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50,000천원으로 연평균 3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 비용은 서울시 관광체육국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연간 30,000천원 비용 산출

※서울시 관광체육국 스포츠의 날 홍보 및 운영비 30,000천원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는 태권도 단체가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추계기간 동안 태권도의 날 행사는 연1회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50,000천원 (연평균 30,000천원)
- 총 비용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입	-	-	-	-	-	-	-	-	-
	소계(a)	-	-	-	-	-	-	-	-
세출	제7조제2항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비용)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총비용(b-a)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주1: 태권도의 날 행사비용은 서울시 관광체육국 유사사업의 행사비용 준용

- 태권도의 날 홍보 및 행사비용 ≙ 150,000천원
- = 30,000천원 × 5년

※참고) 서울시 관광체육국 스포츠의 날 홍보 및 운영비를 참조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무관	이혜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